

2026 신한대학교 제2대 감사운영위원회 제7차 회의

일시: 2026. 7. 1. 16:00

장소: 행함관 3층 학생회의실 1

0. 성원점검

감사운영위원장		원채빈	
감사운영부위원장	이채은	간호대학	조영윤
공과대학	어태경	디자인예술대학	강혜성
보건대학	배서현	태권도·체육대학	문시연

총원 7명, 재적 5명, 불참 2명

*불출석 빨강, 대리참석 노랑, 타회의 참석하여 불출석 하늘색으로 표기

I. 보고 안건

1) 위원장단 보고

■ 감사운영세칙 개정

- 6. 10.(수) 개정위원회의 진행 완료함.
- 6. 22.(월)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감사운영세칙 심의·의결 완료함.
- 6. 22.(월) 감사운영세칙 개정본 업로드 완료함.

■ 감사 결과 공고

- 총학생회 홈페이지 내 감사 결과 공고 게시판을 개설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누적 게시할 예정임.
- 최종 게시 완료 후 공지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.

■ 2027 총선거

- 2027 총선거에 출마 예정인 위원이 있을 경우 8월 첫째 주까지 위원장에게 전달 바람.

■ 2학기 정기감사 일정

- 11. 19.(목) 정기감사 공고를 시작으로 12. 19.(토)까지 2학기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임.
- 재정운용세칙에 따른 집행 마감일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며, 집행 마감일이 존재할 경우 11. 16.(월)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함.
- ▶ 공과대학: 집행 마감일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특별회계는 해당 일자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학생회비 지원금이 편성될 경우 특별회계 계좌로 이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특별회계는 집행 마감일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.
- ▶ 공과대학: 특별회계 잔액의 귀속 시점에 대하여 질의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특별회계 잔액은 정기감사 종료 이후 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,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.

■ 재정운용세칙 관련

- 제5조 제6항에 따라 예·결산안은 심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.
- 제6조 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비는 각 기구 소속 위원의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
- 제8조 제3항에 따라 1학기는 1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를 의미함.
- 제13조 제5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음.
- 제21조에 따른 특수목적회계를 운영하는 학과는 모델콘텐츠학과만 해당함.

■ 징계 사안

- 감사자료 제출 지연 시 주의 1회 부여함.
- 감사자료 제출이 4일 이상 지연된 경우 주의 2회 부여함.
- 감사자료에 기재 누락 또는 금액 오기가 있는 경우 1회당 주의 1회 부여함.
- 제출한 감사자료 중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누락된 자료 1부당 주의 1회 부여함.
- 결산 증빙물 제출 미비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집행이 존재하는 경우 1회당 경고 1회 부여함.
- 총학생회비 또는 배정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회당 경고 1회 부여함.
- 해당 학기 예·결산안과 실제 재정 운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학생자치기구의 보유 재정이 감액되었을 경우 경고 1회 부여함.
- 예비비 초과 책정했을 경우 주의 1회 부여함.

- 예·결산안 미공개 1부당 경고 1회 부여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예·결산안 공개가 7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경고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.
- ▶ 공과대학: 기한을 초과하였더라도 공개가 이루어진 사안인 만큼 경고보다는 주의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추가 의견이 없을 경우, 공개 기한을 초과하여 업로드한 경우에는 주의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행함.

II. 논의 안건

■ 1학기 정기감사 업무 분장

- 감사운영세칙 제22조에 따라 총학생회 감사는 위원장, 동아리연합회 감사는 부위원장이 주관하여 진행함.
- 또한 감사운영세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1인당 하나의 단위 및 해당 단위 소속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 해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구성원에게 감사 대상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.
- 이에 따라 업무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구성원 1인당 단과대학 1개 및 학과 5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자 제안함.
- ▶ 감사운영위원장: 금일 회의에 불참한 디자인예술대학 및 보건대학 위원에게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음.

■ 감사운영세칙 제22조(업무 분장) 의결

- 구성원 1인당 단과대학 1개 및 학과 5개를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 의결 진행함.
- 찬성 3명, 반대 0명, 기권 0명 →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.

III. 폐회 (16:31)